#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00

발의연월일: 2021. 5. 26.

발 의 자: 민형배·김병욱·민병덕

박상혁 · 송재호 · 이규민

이용빈 · 이용선 · 이정문

홍익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활용 논의는 데이터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데이터 혁신 과정에서 시민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정보주체인 시민도 데이터 활용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합니다. 정보주체인 시민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주체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불편함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동시에 산재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개인정보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

- 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함(안 제4조제 3호, 제35조의2 신설).
- 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및 관련 시책의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라.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 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시 공개할 수 있

도록 함(안 제32조).

- 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같다)"를 "같다) 및 전송"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한국개인정보원) ① 정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시책의 발굴·추진을 위하여 한국개인정보원(이하 "개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개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개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의 연구・조사 및 개발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통계의 작성 · 분석
  - 3.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원인·위험요인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전 문기술 지원
- 5.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 · 보급 및 표준화 지원
- 6. 가명정보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전문기술 지원
- 7.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 양성
- 8.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컨설팅
- 9. 자율규제 단체의 지정,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지원
- 10.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
-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홍보 지원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보호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④ 개인정보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 3. 그 밖에 개인정보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 ⑤ 개인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개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개인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개인정보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사항과"를 "등록여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위원회는"을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 나.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정보일 것
- 3.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및 가공을 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전송을 요구받은 개인정 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 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 ⑥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개인의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대상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방법 및 수수료, 제5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거절 및 전 송 중단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2항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
  -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 재정적 능력
  - 3.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설비규모의 적정성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의 지원
  - 2. 개인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 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 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철회 내역
-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 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전송을 거부한 자
- 10의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의3제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10의4.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인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개인정보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설립위원회는 개인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보호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개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개인정보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한국개인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제14조의2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개인정보원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제1 4조의2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개인정보원이 승계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인터 넷진흥원에 대한 행위 중 제14조의2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개인정보 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개인정보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 중 제14조의2와 관련 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국개인정보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 진다.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 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 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같다) 및 전송-----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 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 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 다. <신 설> 제14조의2(한국개인정보원) ① 정 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시책의 발굴 • 추진을 위하 여 한국개인정보원(이하 "개인

-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개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개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의 연구·조사 및 개발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
- 3.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원인・위험요인 등에 관한 조사・분석및 전문기술 지원
- 5.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 보급 및 표준화 지원
- 6. 가명정보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전문기술 지원
- 7.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 양

   성
- 8.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컨설팅
- 9. 자율규제 단체의 지정, 자율 점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자

<u>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 지</u> <u>원</u>

- 10.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
-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홍보 지원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개인정보원의 업무 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보호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 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 업
- ① 개인정보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 른 수입금
- 3. 그 밖에 개인정보원의 운영 에 따른 수입금
- ⑤ 개인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 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 1. ~ 3. (생 략)
  -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 보파일
  - 5. (생략)
  -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 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 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 국개인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
- ⑦ 개인정보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2조(개인	] 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del>)</del>	

2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u>등록</u>
여부와	 
<b>.</b>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 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공개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설>

- (5)·(6)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 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나 제1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계약에 따라 처리 되는 개인정보
  - 나.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정보일 것

- 3.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 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및 가 공을 통해 별도로 생성한 정 보가 아닐 것
-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 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 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다른 개인정보처 리자 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 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전송을 요구받은 개 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컴퓨 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 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 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한 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 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의 규정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 ⑥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 른 개인의 법률상 보호받는 권 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대상 및 방법, 제3항에따른 전송의 기한, 방법 및 수수료, 제5항에 따른 전송요구의거절 및 전송 중단 등의 방법에

<신 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 안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2항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안전하

   게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기

   술적・관리적 조치계획
-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 재정적 능력
   3.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설비규모의 적정성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 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의 전송 요구권 행사의 지원
- 2. 개인정보의 통합·관리·분 석 및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준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 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신 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 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 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
     목 목록
  -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 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 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 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

요구 • 철회 내역

-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 리 전문기관에서 구축・운영하 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 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 리 · 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 6조-----

하는 방법 · 절차에 따라 대리인 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0.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1. ~ 13. (생략)

③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전송을 거부한 자

10의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 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 자

10의4.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 한 자

11.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